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뉴욕주 항소부 제2부 임명안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항소부(New York State Appellate Division) 제2부 임명안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련된 최고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의를 막는 가장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러한 판사들이 지속적으로 훌륭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법의 신성함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최고 중의 최고이며, 이들이 뉴욕의 주민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Helen Voutsinas** 판사는 항소부(Appellate Division) 제2부에

임명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Voutsinas 판사는 나소 카운티 제9 및 제10구역 항소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과거 그는 나소 카운티 지역 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2018년 나소 카운티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판사가 되기 전, 그는 뉴욕주 대법원(New York State Supreme Court) Steven Jaeger 판사의 수석 법무 서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Voutsinas 판사는 과거 롱아일랜드 히스패닉 변호사(Long Island Hispanic Bar) 협회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Janice Taylor** 판사는 항소부 제2부에 임명되었습니다. Taylor 판사는 1998년부터 퀸즈 카운티 대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2012년 재임용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그는 뉴욕시 민사 법원(Civil Court of the City of New York)에서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Taylor 판사는 또한 맥컨 B. 앨런 변호사 협회(Macon B. Allen Black Bar Association)의 전 대표이자 현재 이사회 의장입니다.

**Lillian Wan** 판사는 항소부 제2부에 임명되었습니다. Wan 판사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킹스 카운티 대법원(Kings County Supreme Court)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거 전, 그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뉴욕주 청구 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Claims) 판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뉴욕시 가족 법원(New York City Family Court)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Wan 판사는 사법 윤리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Judicial Ethics) 공동위원장, 뉴욕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 연합(Asian American Judges Association of New York) 전 대표, 브루클린 여성 변호사 협회(Brooklyn Women's Bar Association) 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Wan 판사는

현재 카도조 로스쿨(Cardozo School of Law) 외래 교수이며, 로스쿨 1학년 학생에게 법무 및 법률 작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Barry Warhit** 판사는 **항소부 제2부**에 임명되었습니다. Warhit 판사는 2019년부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대법원(Westchester County Supreme Court)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과거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제9 사법지구(Ninth Judicial District Judge of Westchester County) 선임 판사 겸 범죄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원(Westchester County Court)의 판사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태리타운 빌리지의 판사 대행을 맡았습니다. Warhit 판사는 현재 브랜다이스 판사 법학 학회 최고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Justice Brandeis Law Society) 위원입니다.

항소부 제2부의 사법 심사 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십 명의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 지원자만이 주지사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무결성, 독립성, 리더십, 지성, 법적 능력, 판단, 기질 및 경험을 보여야 했습니다.

주지사실에서는 대법원 항소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심사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후보자 심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 및 사법 법령(Judiciary Law)에 따라 주지사는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선출된 사람들 중 각각의 항소부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